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72호

2019. 6. 20.

| 건 명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사회복지과) | | | |
|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안 및 제출자 | 논 산 시 장 | 제안연월일 | 2019. 6. 13. |
| 소 관 위 원 회 | 행정자치위원회 | 회부연월일 | 2019. 6. 13. |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장애등급을 반영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에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「장애인복지법」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O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 중 장애인의 "장애 등급제"를 "장애정도"의 용어로 수정(안 제7조제2항 별표)

□ 검토의견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용어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